

코로나 3법, 건강권의 확대인가 자유권의 억압인가

최흥조
(시민건강연구소, 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)

(시민건강연구소 웨비나,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정의)

1 코로나 3법

코로나 3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

	배경	개정 내용
감염병 예방법	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 대처 요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감염병 대비 의약품·장비 비축 및 관리 2.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범위 3. 강제처분 권한 강화 4. 역학조사관 규모 확대
검역법	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 요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대상 확대 2. 검역환경 변화 반영한 검역 체계 개선
의료법	의료기관 내 감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및 자율보고 제도

권리의 확장과 새로운 정의 (1)

- 검역법

- 제3조의2(국민의 권리와 의무)

- ①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,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**알 권리**가 있다.
- ② 국민은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**피해를 보상**받을 수 있다.
- ③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- 제2조(정의)

5. '검역감염병 접촉자'란 검역감염병 환자,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(이하 "검역감염병 환자등"이라 한다)와 접촉하거나 **접촉이 의심되는 사람**을 말한다.

(과거) "검역감염병 의심자"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와 **접촉**하거나 검역감염병 **병원체에 노출**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.

권리의 확장과 새로운 정의 (2)

감염병예방법

13. "**감염병환자**"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.

14. "**감염병의사환자**"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15. "**병원체보유자**"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15의2. "**감염병의심자**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(이하 "감염병환자등"이라 한다)와 **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**되는 사람(이하 "접촉자"라 한다)

나. 「검역법」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**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**

다.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**감염이 우려되는 사람**

2 감염병의심자는 누구인가?

역학조사 현장의 언어

2020.05.14.  질병관리본부
KCDC

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변경
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

의사환자 사례정의 개정

개정 전(7-4판)	개정 후(8판)
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이 나타난 자	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* 이 나타난 자

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개정

개정 전(7-4판)	개정 후(8판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의사의 소견에 따라 환인미상배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·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·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*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·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*이 나타난 자·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*이 나타난 자

*주요 임상증상: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, 폐렴 등

- 증상
- 역학적 연관성

감염병의심자의 의무

- 자가격리 조치 위반
 - 제79조의3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검사 거부
 - 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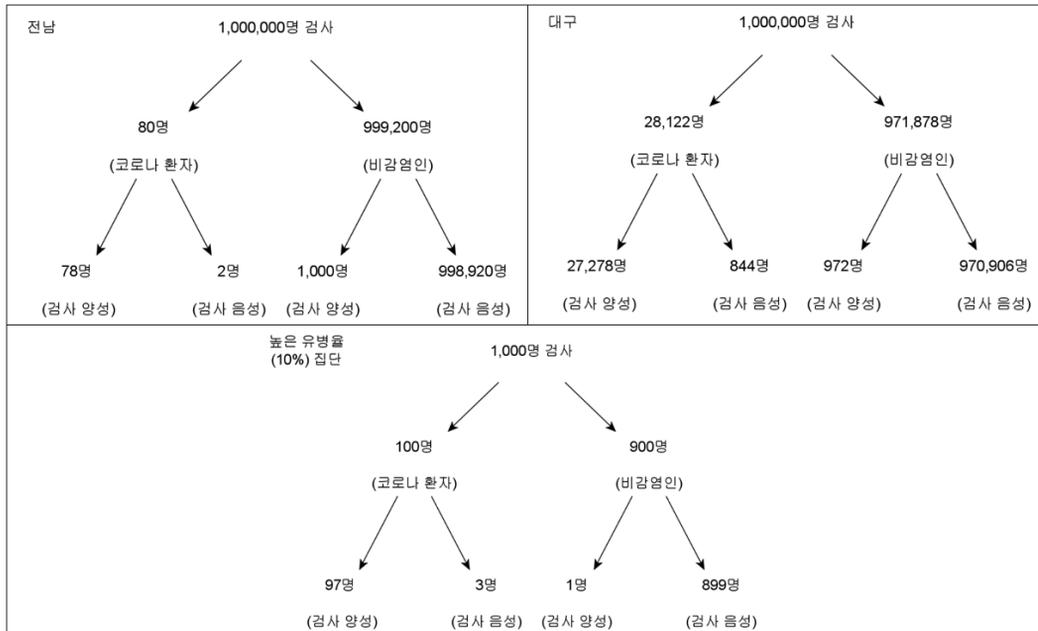
3 보건학적 검토 - 두 가지 잣대

두 가지 잣대

- 진단 받을 권리의 확대
- 비자발적 자가격리의 적절성

진단 대상자 확대의 보건학적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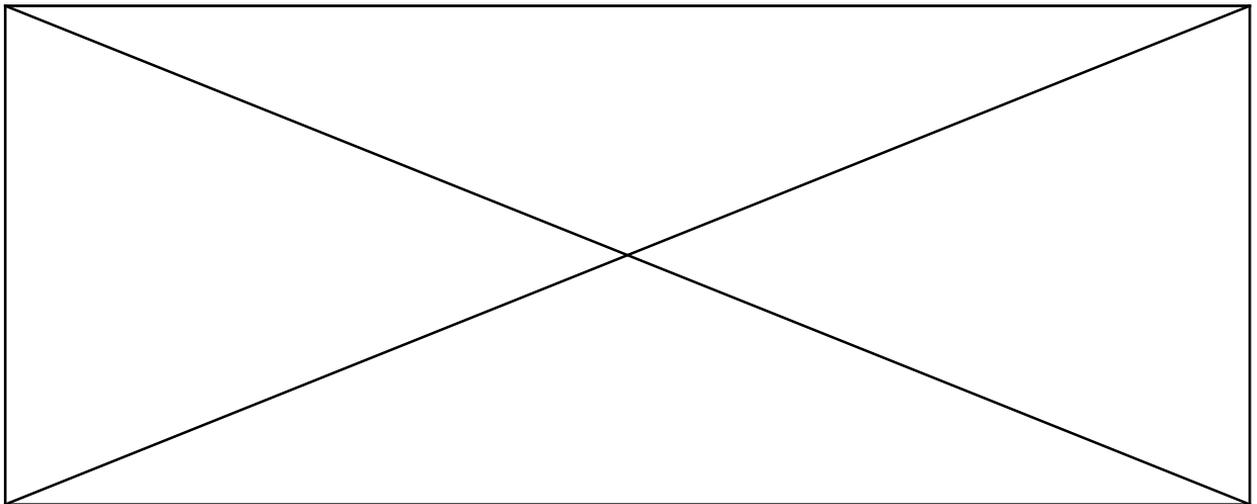
- 사례정의 선정의 역학적 근거와 임상적 근거의 중요성



가정: 민감도 97%, 특이도 99.9%
 유병률(4월 29일 시점): 전남은 10만명 당 0.8명, 대구는 281명

감염병예방법의 효과

- 사례정의 확대 시행의 효과 확인
- 감염병예방법 개정의 효과 없음



비자발적 자가격리

- 시라쿠사의 원칙

-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서 격리조치는 가능한 자발적 동의하에 '최소한'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 강제적 조치는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쓰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'마지막 방편'으로서 행해져야 한다

- 에이즈예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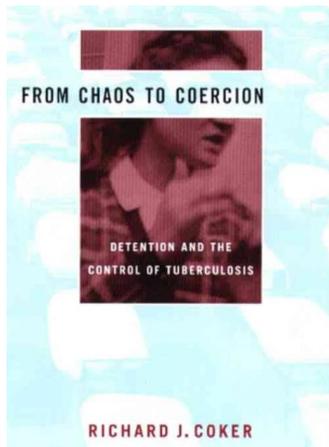
- 1999년 감염인 강제격리 보호조치 조항 삭제

- 정신보건법(현 정신건강복지법)

- 2016년 강제입원제도인 보호입원제도 위헌 결정

새로운 감염병 발생 -> 혼란 -> 억압

- 1990년대 뉴욕의 새로운 결핵



- 발생률 급증, 사망률 급증
- 낮은 치료성공률
- HIV동시감염 + 다제내성결핵
- ‘말 안 듣는(recalcitrant) 환자’의 강제격리

“자유권과 공공의 이익 균형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채 시행되는 강제적 조치는 ... (실제 상황이) 좋아지고 있다는 연막(smokescreen)이 될 수 있다 ”

왜?를 묻지 않은 역사

사회일반

술근길 서울 지하철 노숙인 결핵환자 탐승해 승객 하차 소동

손석호 기자 김민정 기자

입력 2018.10.04 17:59 | 수정 2018.10.04 18:43

4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결핵에 걸린 노숙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을 탈출해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 전연 하차하는 소동이 있었다.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이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에 대한 역학조사를 준비 중이다.

사회 일반

중증 결핵환자 4000명 넘는데... 입원 명령은 고작 500명

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

입력 2012.07.24 03:29

[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심층 리포트] '입원 명령제' 시행 1년 지났지만... 결핵 환자 여전히 방치

열악한 치료환경 - 국립 결핵병원 전국에 두 곳 400여명만 입원치료 가능해

결핵진단 필수장비 CT도 없이 의료진 마스크만 쓰고 진료

환자 지원책도 미흡 - 2년간 매일 먹어야 하는 약 한 달에 6만3000원 달해

정부는 1년 동안만 지원... 생계비 지원도 31명에 그쳐

"안일한 정부정책 계속되면 결핵퇴치에 100년 걸릴 것"

사회 일반

[단독] "HIV 감염 위험, 따지지도 않고 처벌?" 에이즈 예방법 19조 위헌심판 제청

등록 2020-01-15 04:59 수정 2020-01-15 16:11

ㅎ

서울서부지법 신진희 부장판사

"언제 매개 행위만 해도 징역형

불명확해 최형법정주의 어긋나

의약 발달로 감염 위험 줄었는데

포괄적으로 처벌해 형곡권 침해"

dongA.com

2020-05-14 12:30:00 편집

☞ 프린트 ☞ 닫기

자가격리 이탈리아 안심밴드 착용 누적 30명...10명은 격리해제

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자 중 이탈하면 착용 13일 오후 6시 기준...
무단 이탈 393건에 384명 경찰수사 278건 299명...검찰송치 122건 131명

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을 두고 묻고,
그 이유를 풀어낼 다른 방법이 있다면, 그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
강제적 조치 이전에 선행되는 것이 윤리 원칙

4 요약 및 결론

자발성에 기초한 연대와 협력

- 코로나3법은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‘감염병의심자’ 규정의 추가로 과도한 자유권 억압의 논란을 일으킴
- 진단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, 검사 대상자의 선정은 보건학적이고 임상적 근거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함
- 강제적 검사의 보건학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– 단순한 연막 혹은 수사인가, 실제적 효과인가
- 비자발적 격리에 우선하여 자발적 격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자원과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
- ‘환자’를 처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, 피해는 모두를 향할 수 있음 – 에이즈예방법, 결핵예방법, 감염병예방법

감사합니다.